

공 시 송 달 공 고

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목: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(202004)

2. 내용

가.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: 【붙임참조】

나.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: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

다. 과태료 부과 기관명 및 문의

○ 명칭: 서울특별시 마포구

○ 문의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

[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(성산동), ☎02-3153-9650]

3. 공고기간: 2020년 4월 7일 ~ 2020년 4월 21일

4. 공고사항

가.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나.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%의 가산금을 징수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의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.

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.

5. 납부기한: 2020년 4월 30일

6. 납부방법: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(가상계좌번호)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

2020년 4월 6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